

2026년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지역 소공인 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2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화성상공회의소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나.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능률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에 따른 경영 안정화 발판 마련

다. 사업기간 : 2026. 04월 ~ 10월

라. 사업내용 : 소공인 생산 능률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지원

- 근로자 안전 장비 최신화 및 작업장 내 재해 발생 고위험 시설 개선 지원
- 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및 방호 장치 등 안전상 조치 품목 지원

지원분야	품목명
산업안전 강화지원	비상전원장치, 고압가스용기 전도방지장치, 방호장치(전단기, 프레스, 용접기, 로울러기, 톱기계, 다이캐스팅기, 사출성형기, 압연기·압출기, 선반, 지게차 등), 추락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끼임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낙하물방지망, 사각지대 표시대 및 반사경, 위험물질 자동 경보기, 유해물질 감지센서, 유해가스 경보기, 절연구조 전동공구, 이탈방지끈 및 안전줄, 누전차단기, 대피 유도등, 화재감지기,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비상대피물품, 집진기(배관) 시스템, 집진·환기 장치, 국소배기장치, 유·수분 분리 설비, 폐수 처리 설비 등
근로환경 개선지원	작업자 접근 알림장치, 입·좌식 근로자용 작업의자·스툴, 내충격성 작업장 바닥매트, 작업발판, 높낮이 조절 작업대 및 의자, 고열감소, 습기제거 환기설비, LED조명 교체, 스마트 조명시스템, 실내 작업장 불침투성 바닥, 흡음·방음·댐핑 시설,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세척·세안시설, 유해물질 보관함, 유해광선 차단판, 이동식 사다리, 안전대 부착 설비, 전도방지 바닥 청소기, 적재대, 공구함, 안전보건 표지판, 개인보호 장구,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이동식 대차, 외골격 로봇 등
사전진단	산업·안전 컨설턴트 타당성 검토, 사전 현장진단 및 개선 권고

2. 세부 내용

가.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 지원대상 : 화성시 소재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2, C24~C31업종 소공인 업체(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산업분류코드	주요업종	산업분류코드	주요업종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8	전기 장비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5	금속가공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동탄 1~9동, 병점동,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지역 제외

○ 지원방법

- 산업재해 예방 물품·장비 비용지원 (1개사 당 최대 300만원)
 - 1) 산업·안전 컨설팅 제공 (1기업 당 2시간 X 1회)
 - 2) 300만원 한도 내 공급가액의 90% 지원

※ 공급가액 300만원 초과금 + 부가세는 소공인 자부담

지원항목	세부내용	지원내용
산업·안전 컨설팅	· 산업안전 컨설턴트 타당성 검토, 사전 현장진단 및 개선 권고	1기업 당 2시간(1회)
산업재해 예방 물품 구입·설치	· 300만원 한도 내 공급가액의 90% 지원	300만원

○ 모집기간 : 04월 24일(금) ~ 05월 08일(금)

※ 모집 미달되는 경우, 모집기한 연장 가능

○ 지원업체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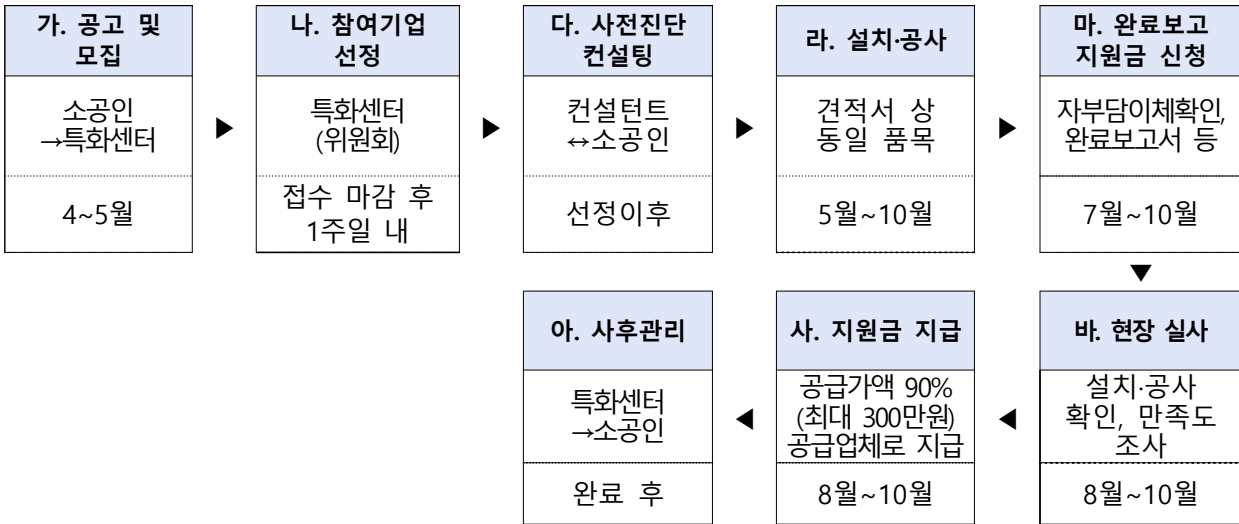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토대로 선정평가

○ 지원업체 선정 통보

-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선정평가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나. 지원 절차



다. 세부 추진 절차

절차	업무	세부내용
①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소공인) 신청서, 추진계획서 등 서류 준비·작성하여 제출 - (센터)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심사위원 구성
②	선정평가	- (센터) 선정 평가 및 지원 소공인 선정 - (센터→소공인) 선정 소공인 대상 선정 및 지원금 신청 관련 개별 안내
③	사전진단 및 개선 권고	- (컨설턴트→소공인) 소공인 사업장 안전 진단 - (센터→소공인)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품목 점검 - (소공인→센터) 권고 사항 수정 후 회신
④	설치-공사	- (공급업체↔소공인) 기한 내 설치-공사 진행
⑤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 (소공인→센터) 지원금 지급 신청서, 완료보고서 등 서류 제출 · 1차 신청: 07월 예정 / 2차 신청: 09월 예정
⑥	현장실사	- (센터→소공인) 현장실사를 통한 적합성 검토 · 견적서 상의 품목과 동일 여부 확인 · 사업장의 적합한 품목인지 적합성 검토 실시
⑦	지원금 지급	- (센터→공급업체) · 300만원 한도 내 공급가액 90% 지급 · 공급가액 잔금 + 부가세는 소공인 자부담 · 1차 정산: 08월 예정 / 2차 정산: 10월 예정
⑧	사후관리	- (센터) 참여 업체별 필요 사업 연계 지원

※ 세부 추진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라.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임금체불 업체는 지원 불가
- 사업 선정통보 후 신청서 및 관련 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업체는 지원 불가
- 선정통보 이전에 선 진행한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사전변경승인 없이 공급업체를 변경,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원 불가
(센터와 사전 협의 필요)
-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 지원 불가**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당해년도 센터 사업에 공급업체로 참여한 업체는 지원 불가
- 사업기간 내 제작 미완료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센터 판단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불가
- 선정 후 중도 포기 업체는 포기 확정일자로부터 2년간 화성시 소공인특화 지원센터 사업 참여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마. 지원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참여 선정업체가 모집 업체 수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세부 제작 사양은 진행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센터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견적내용 변경, 공급업체 변경, 선정 포기, 자부담금 이체 내역 확인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사유서 작성 후 변경 가능
- **동일 주소지 내 2개사 이상 신청 시 지원 불가**
 - 단, 동일 주소지라도 공간분리 및 기업 간 독립성이 명확한 경우 예외적 지원 가능
 - ※ 현장 실사를 통해 별도 사업장 여부 확인 진행
- 공급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소공인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업체를 직접 선정
(복수 견적을 받은 후 최소 가격을 제시한 공급업체 선정)
 - ※ 화성시 소재 공급업체 선정 우선 권유하나 부득이할 경우 예외 인정
 - 지원금 한도 내 1개사 이상의 공급업체 자유롭게 선택하여 설치 및 구매 가능
(복수 업체 선정하더라도 각 물품/공사 건마다 비교 견적이 동반되어야 함)

- 당해 센터사업(마케팅, 컨설팅, 자유행사) 수혜업체는 공급업체로 선정 불가하며, 당해 공급업체 또한 센터 사업에 참여 불가
- 신청서 견적품목과 관련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함
- 신청업체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조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공급업체 선정 불가
- 납품 관련 이전사항은 소공인과 공급업체간 해결해야 함
- 공급업체에 지원금 입금 시점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시켜야 함

○ 기업당 사업지원 상한에 관한 사항

- 지원금 지급은 지급신청서 및 정산서류 등을 검토 후, 신청 월 기준 익월 말일 지원금 지급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및 화성시 시설(센터) 운영 및 자유행사 지원기준(안)에 따름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중 당해 연도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구분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성시
지원한도	5백만원	5백만원
해당사업	국내·외 인증 지원 공동 국내박람회 참가, 공동연구회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브랜드 이미지 제작 지원,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카탈로그 제작 지원, 홈페이지 제작 지원, 시제품 개발 지원, 산업재해 예방 지원, AI 마케팅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은 해당 없음

- 단,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기업의 지원한도를 7백만원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개별 기업의 누적 지원금액 등을 감안하여야 함

3. 신청 안내

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 제출 (sogong@korcham.net)

나. 신청 기간 : 04월 24일(금) ~ 05월 08일(금)

다. 신청 서류

1)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서식1] 사업신청서 1부
②	[서식2] 추진 계획서 1부
③	[서식3] 협약서 1부
④	[서식4] 지원 사업 대상선정 평가 기준표 1부
⑤	<공통1> 개인정보 동의서(상공회의소, 공단) 1부
⑥	<공통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⑦	<공통3>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 명시 必) 각 1부
⑧	<공통4>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공통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부 (24~25년)
⑩	<공통6> 주업종명(업종코드) 조회 화면 인쇄본(서명 필수) 각 1부
⑪	<공통7>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1부
⑫	<공통8>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2) 선정 승인 이후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②	완료보고서 1부
③	공급업체 견적서 1부
④	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1부
⑤	공급업체 통장 사본 1부
⑥	세금계산서 1부
⑦	자부담 입금 확인증 (부가세 + 지원금초과금액) - 수취인, 금액 명시 必 1부

4. 접수 및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F.A.X.	E-mail
강민준 매니저	031-354-3641	031-354-3642	sogong@korcham.net